

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

회사명 : 군포도시공사 군포환경관리소

제 작 회 사 명	(주)다산에스엠
기 기 명 칭	굴뚝배출가스(먼지)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
형 식	DIAS-5000Di
형 식 승 인 번 호	제ATMSGS-2020-66호
형 식 승 인 년 월 일	2020. 08. 04.
기 기 고 유 번 호	SMI-N512
취 득 년 월 일	2021. 06. 21.

□ 검 사 내 용

정도검사일	검사결과	검 사 자		검사자 날인	비 고
		소 속	성 명		
2021. 07. 07.	적 합	한국산업기술시험원	서 정 훈		최 초 정도검사
2023 .03. 30	적 합	한국환경기술원(주)	이종혁		ETI-23-5-042
2025 .04. 11	적 합	한국환경기술원(주)	조나눔		ETI-25-5-068

대기분야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

접수번호 : 제ETI-25-S-068호

접수일자 : 2025년 4월 9일

회사명 :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

주소 :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-58

1. 시험품목 : 굴뚝배출가스(먼지)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
2. 제작회사 : 다산에스엠
3. 제작번호 : SMI-N512(ST#1)
4. 형식 : DIAS-5000Di
5. 형식승인번호 : 제ATMSGGS-2020-66호
6. 정도검사일 : 2025년 4월 11일
7. 검사결과 : 다음의 점검표와 같음.

위는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, 제8조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가 의뢰한 시험품에 대하여 시험한 정도검사 점검표임을 증명합니다.

2025년 4월 30일

한국환경기술원 (주) 대표 이



굴뚝배출가스(먼지)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

1. 일 반 사 항

회 사 명	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	제 작 회 사	다산에스엠
대 표 자	배재국	제 작 번 호	SMI-N512(ST#1)
형 식 (모델명)	DIAS-5000Di	형식승인번호 (승인받은일자)	제ATMSGGS-2020-66호 (2020년 8월 4일)
최초정도검사일(연월일)	2021년 7월 7일	직전정도검사일(연월일)	2023년 3월 30일

2. 구 조 확 인

항 목	내 용	결 과	비 고
측 정 범 위	형식승인서상의 취득한 최대범위 내의 측정범위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 다만, 형식승인된 측정범위가 다수인 경우, 설치된 측정기기의 측정범위에 가까운 측정범위를 기준하여 정도검사를 수행한다.	적 합	0 ~ 100 mg/m ³
측 정 방 법	광산란법, 광투과법, 베타(β)선탄수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방법이어야 한다.	적 합	광투과법
배 출 가 스 채 취 부	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, 측정방법에 따라 아래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 ① 광산란법, 베타(β)선탄수법 :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, 채취부의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에 채취부를 깨끗한 공기로 청소할 수 있는 퍼징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 ② 광투과법 : 굴뚝내부를 측정셀로 하여 배출되는 먼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, 굴뚝내의 배출가스 측정기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측정기 앞부분에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 다만, 측정 데이터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.	적 합	
측 정 구 조	측정기는 측정구조에 따라 샘플링 및 인슈트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.	적 합	인슈트타입
지 시 · 외 부 출 력 부	측정값을 질량농도 단위인 mg/m ³ 또는 부피농도 단위인 ppm 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, 외부출력장치를 갖추고 측정값의 등가 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TMS에 전달 될 수 있는 신호이어야 한다.	적 합	

3. 성 능 확 인

시 험 항 목	시 험 기 준	결 과	비 고
제로드리프트	측정범위의 1.0 % 이하	적 합	0.1 %
스팬드리프트	측정범위의 2.0 % 이하	적 합	0.2 %
반 복 성	측정범위의 2.0 % 이하	적 합	0.1 %
현장적용계수	배출허용기준의 20.0 % 이하	적 합	4.9 %
응 답 시 간	2 분 이하(단, 베타(β)선탄수법은 15분 이하)	적 합	41초

4. 표 시 사 항

시 험 항 목	시 험 기 준	결 과	비 고
표 시 사 항	형식승인표(수입신고표) 및 정도검사 증명서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.	적 합	부 착

종합판정 및 의견	적 합	검 사 자	조 나 남 
-----------	-----	-------	---